## 5. 띠장 긴장 공법의 일반 안전조치 사항

- (1)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는 사전에 다음의 내용에 관련한 작업계획서의 작성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가) 띠장의 설치 위치, 시공순서 등에 대한 띠장 긴장 공법의 제반사항
- (나)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,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, 양중기 사용작업 등
- (다)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 지반의 굴착작업
- (라) 중량물의 취급작업
- (마) PS 강선의 계측, 유지관리 및 철거에 대한 제반사항
- (2)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·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· 관리·개선하기 위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고려하여 안 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(3) 시공계획서 및 작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떨어짐, 맞음, 끼임, 넘어짐 등의 재해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경고표지판, 낙하물방지망,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4) 작업자의 작업통로 및 작업공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개소에 작업발판,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5)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구의 착용상태 감시, 악천후 시에는 작업의 중지, 관계근로자 이외의 자의 출입통제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, 무너짐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즉시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.
- (6) 띠장 긴장 공법의 적용은 현장 상황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하는 제반 설계변경 요인에 대해서는 검토서를 제출하여 책임기술자 및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(7) 띠장 긴장 공법 흙막이 공사 시 PS 강선 설치 및 긴장과 관련하여 다음의 안전작업절차를 준수하여 관련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